

##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3. 6. 25.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3. 6. 22
- 다. 회부일자 : 93. 6. 22
- 라. 상정일자 : 93. 6. 25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만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(중업원할 포함)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(대구시설 관리공단)에 대하여도 육성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지방공단(대구시설 관리공단)에 대하여도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(중업원할)을 면제토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92. 11. 14(제2813호)로 대구직할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어 93. 4. 26 시설관리공단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소유토지 및 동법 제9조에 의거 공공복지를 위하여 지방공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구세를 면제코자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 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개정조례(안) 1부

##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지방공사"를 "지방공사 및 지방공단"으로 한다.

제2조중 "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가"를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 및 대구시설 관리공단이  
"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(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사</u>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과세면제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<u>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</u>가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(종업원할을 포함한다)을 면제한다, 다만,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조(목적) ……<u>지방공사 및 지방공단</u>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</p> <p>제2조(과세면제)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<u>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</u>                      및 <u>대구시설관리공단</u>이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                      ……</p>